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·반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407호, 2023. 5. 16. 공포, 2023. 11. 17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정책자문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3. 10. 6. ~ 10. 2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

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,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·반영하기 위하여”를 “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중 “설치”를 “명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위원등”을 “구성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기능·회의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정책자문위원회규정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 (목적) 이 영은 <u>정부의 중요 정책의 입안,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</u> <u>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·반영하기 위하여</u> <u>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 <u>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 제7조의2에 따라 <u>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 (<u>설치</u>) ① <u>중앙행정기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</u> <u>중앙행정기관의 장은</u> <u>당해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 ③ 위원회는 기능·회의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	제2조 (<u>명칭</u>) <u><삭 제></u> ① (현행 제2항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제3조 (위원등) ① <삭제>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3조 (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기능·회의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7